



#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19년 9월호

## Contents

### 알리는말씀

- 한울회계법인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완료

### 회계정보

-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위반  
점검결과 분석 및 유의사항
-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 세무 및 법률정보

- 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  
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http://www.crowe.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알리는 말씀

한울회계법인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금융위원회 등록 완료(2019년 9월)

한울회계법인은 신 외감법의 규정에 따라 2019년 9월 금융위원회에 1차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나군)을 완료 하였습니다. (총 20개 법인 등록: 가군-4, 나군-5, 다군이하-11)

1차 등록 회계법인은 10월 14일 사전통지 예정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는 신 외감법에 근거하여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등록된 회계법인은 내년 주기적 지정제\* (직권지정 포함)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고, 그 외 상장회사와 자유수임도 가능합니다.

(\*감사인을 6년 자유수임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

→ 10월 14일, 약 220개 회사에 대한 지정 감사인을 사전통지할 예정)

(참고사항)

(1) 2020 사업연도부터 신규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상장회사는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등록제 시행 전에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한 상장회사도 기존 감사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위반  
점검결과 분석 및  
유의사항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위반 점검결과 분석 및 유의사항

[출처: 금융감독원, 2019. 9. 17]

I. 개요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명확화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 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제도시행 이후 감사前 재무제표 위반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기업들에게 유의사항을 안내

《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

구 분	세부 내용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 1 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출서류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처	▪상장법인 :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 비상장법인 :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									
제출시점	▪외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별도(개별) 재무제표</th> <th>연결 재무제표* (K-IFRS 적용 회사)</th> </tr> </thead> <tbody> <tr> <td>일반법인</td> <td>정기주주총회일 6 주전</td> <td>정기주주총회일 4 주전</td> </tr> <tr> <td>회생절차진행법인</td> <td>사업연도 종료일 후 45 일</td> <td>사업연도 종료일 후 60 일</td> </tr> </tbody> </table>	구분	별도(개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K-IFRS 적용 회사)	일반법인	정기주주총회일 6 주전	정기주주총회일 4 주전	회생절차진행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후 45 일	사업연도 종료일 후 60 일
	구분	별도(개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K-IFRS 적용 회사)							
일반법인	정기주주총회일 6 주전	정기주주총회일 4 주전								
회생절차진행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후 45 일	사업연도 종료일 후 60 일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 일 이내 제출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 조원 이상 회사는 70 일 이내 제출)										

점검결과분석

II. 점검결과 분석

1. 위반유형별 현황

□ (총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13.12.30.) 이후 홍보 및 점검으로 위반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음

\* 상장법인: 167 사('15년) → 49 사('16년) → 39 사('17년)

비상장법인: 284 사('16년) → 107 사('17년)

감사前 재무제표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 현황]

제출의무 위반회사

(단위 : 사)

현황

구 분		'15년 *	'16년	'17년
상장	미제출	59	20	22
	지연제출	97	18	17
	부실기재	11	11	-
	<b>위반 계</b>	<b>167</b>	<b>49</b>	<b>39</b>
	총 회사수	2,017	2,097	2,167
비상장	미제출	-	113	55
	지연제출	-	164	52
	부실기재	-	7	-
	<b>위반 계</b>	<b>-</b>	<b>284</b>	<b>107</b>
	총 회사수	2,339	2,533	2,687

\* 상장법인은 '14 회계연도, 비상장법인은 '15 회계연도의 경우 제도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위주로 지도(주의공문 발송 및 대표이사 확약서 징구)

가. 미제출 회사 분석

□ (전부 미제출) 감사前 재무제표 5 개 항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식) 전부를 증선위에 ①미제출하거나 ②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되어 미제출로 간주

◦ (일부 미제출) 재무제표 중 일부 항목('별도재무제표 5 개 항목', '연결재무제표 5 개 항목' 포함)을 ①제출하지 아니하거나 ②현장 감사착수일 이후 제출되어 일부 미제출로 간주

□ (상장법인) '17 회계연도의 경우 12 개사가 법정제출기한 이후 1~2 일 이내 제출하였으나 현장감사착수일 이후여서 지연제출이 아닌 일부미제출로 간주되어 전년에 비하여 미제출회사가 다소 증가함

◦ (비상장법인) 조치 첫해인 '16 회계연도에는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113 개사가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17 년도부터 이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자 '17 회계연도에는 50% 이상 감소

감사前 재무제표  
미제출 회사 현황

[감사前 재무제표 미제출 회사 현황]

(단위 : 사)

구 분		'15년	'16년	'17년
상장	전부미제출	3	3	3
	일부미제출	56	17	19
	미제출 계	59	20	22
비상장	전부미제출	-	37	19
	일부미제출	-	76	36
	미제출 계	-	113	55

[미제출 등 위반 원인 분석]

□(상장법인) 주로 제출기한 착오 및 일부항목 누락에서 기인

- 주주총회일('18.3.23, 金) 6 주 전인 '18.2.8.(木)까지 & 감사착수일('18.2.8.)까지 거래소에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18.2.9 일에 제출(일부미제출 간주)
- 다른 재무제표는 모두 제출하였으나, 별도 재무제표의 현금흐름표만 혹은 연결 자본변동표만 미제출

□(비상장법인) 주로 법규 인식 미흡에서 기인

- 직전 사업연도말('16 년말) 자산총액 1 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제출대상이나 제출 당시('17 년말)의 자산총액 1 천억원 이상으로 잘못 알고 미제출
- 감사인에게만 제출기한까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금융감독원(DART 접수시스템)에는 미제출
- 별도 재무제표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연결 재무제표는 현장감사 착수 후에 제출하여 일부미제출로 간주됨

나. 지연제출 및 부실기재 회사 분석

□ (지연제출)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를 법정제출 기한은 경과하였으나 현장 감사착수일 이전에 제출하였습니다.

- (부실기재) 재무제표는 기한 內 전부 제출하였으나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경미하게\*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

\* 재무제표의 중요한 항목이 공란인 경우 등 중대한 부실 작성은 일부미제출로 봄

□ (상장법인) 지연제출 및 부실기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7 회계연도에는 17사(총 상장사 중 0.8%)만 위반하는 등 제도 정착 단계입니다.

◦ (비상장법인) 조치 첫해인 '16 회계연도에는 제출기한 착오('前'에 대한 해석 오류)로 137 개사가 1 일 지연제출하였으나, 제출기한 산정 교육 등으로 '17 회계연도에는 1 일 지연제출은 35 개사로 대폭 감소

감사 前 재무제표  
지연제출 및  
부실기재 회사 현황

[감사前 재무제표 지연제출 및 부실기재 회사 현황]

(단위 : 사)

구 분		'15년	'16년	'17년
상장	지연제출	97	18	17
	(1 일 지연)	(52)	(13)	(11)
	부실기재	11	11	-
	계	108	29	17
비상장	지연제출	-	164	52
	(1 일 지연)		(137)	(35)
	부실기재	-	7	-
	계	-	171	52

[지연제출 등 위반 원인 분석]

□ 주로 제출기한 산정 오류 및 주요 주식사항 부실기재에 기인

- (1 일 지연제출) 주주총회일이 '18.3.23(金)인 경우 6 주가 되는 날('18.2.9, 金) 前이므로 '18.2.8.(木) 24 시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18.2.9 일에 제출
- (부실기재) 현금흐름표 및 주식사항 중 일부 계정과목 및 내용을 공란으로 제출

2. 조치유형별 현황

□ (상장법인) '15 회계연도에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위반회사에 대하여 경조치(경고·주의)나 개선권고를 위주(98.3%)로 하였으나,

◦ '16 회계연도 이후에는 감사인지정 1년 등 중조치가 증가\*

\* 상장법인 중조치 비율: 1.7%('15년) → 46.9%('16년) → 28.2%('17년)

□ (비상장법인) 상장법인에 비해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 등 재무제표 이용자가 적어 위반행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하여

◦ 경고, 주의, 개선권고 등 경조치 위주로 계도하고 있음

\* 비상장법인 중조치 비율: 10.9%('16년) → 13.1%('17년)

감사前 재무제표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조치 현황]  
 제출의무 위반 조치  
 현황

(단위 : 사)

구 분		'15년	'16년	'17년	
상장	감사인지정	2년	-	4	2
		1년	3	19	9
	경고	56	26	27	
	주의	56	-	1	
	조치없음	52*	-	-	
	위반회사 계	167	49	39	
비상장	감사인지정 1년	-	31	14	
	경고	-	46	41	
	주의	-	70	52	
	조치없음	-	137*	-	
	위반회사 계	-	284	107	

\* 1 일 지연제출 회사에 대하여는 외감법 제 7 조의 입법취지 및 제도시행 후 첫 조치인 점을 감안하여 '조치없음'으로 처분하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개선권고 및 대표이사 각서 징구

감사前(전)

재무제표 제출관련  
 유의사항

III. 감사前(전) 재무제표 제출관련 유의사항

1. 모든 재무제표를 증선위(금감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1 를 증선위\*2 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재무제표 종류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

\*2 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시행령§44③)에, 비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 (시행령§44①)에 각각 위탁되어 있어 상장법인은 거래소의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에, 비상장법인은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에 제출

2. 법정기한① 이전이라도 감사인에게 제출시② 금감원(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법령에서 정한 기한(1 페이지 '제출시점' 참조) 계산시, 초일 불산입 원칙(민법 제 157 조)에 따라 초일(정기주총일)은 불산입하고 역으로 6 주전, 4 주전을 계산하여야 함을 주의

- 정기주총일이 목요일인 경우 제출기한은 6 주전(4 주전) 수요일 24 시까지임

㉔ 감사인의 재무제표 기말감사를 위한 현장 감사착수일이 법정 제출기한보다 빠른 경우

-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법정기한 이전이라도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현장 감사착수시) 금감원(거래소)에도 동시에 제출해야 함

**3. 전기재무제표를 그대로 제출시 해당 재무제표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전기(또는 분반기) 재무제표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허위로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신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재무제표가 미제출된 것으로 간주됨을 주의

**4. 감사前 재무제표 업로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후 제출현황을 조회하여 「감사前 재무제표 첨부파일」이 임시저장 상태가 아닌 최종 제출 완료(업로드)되었는지를 재차 확인할 필요

[위반 사례]

상장법인 A 사는 개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출 당일 임시저장하였으나 이를 최종제출한 것으로 오인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않음

비상장법인 B 사는 재무제표 제출 관련 일부 정보를 입력하였으나, 재무제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이탈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않음

**5. 위법사실의 재발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가 조치받은 날로부터 최근 2년 내 재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조치될 수 있음을 주의

**6. 감사前 재무제표 위반이 있는 경우 3년 동안 위반사실이 공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11.1. 「외부감사법」이 개정되어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사실도 공시대상에 포함되어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시(주의·경고 조치는 제외)하도록 변경

◦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출처: 금융감독원, 2019. 5. 13]

금융감독원은 新외감법 도입에 맞춰 하위 법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개요

1. 개요

□ 회계투명성·신뢰성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 전면 개정된 新외감법 도입('18.11.1. 시행)으로 사후적 감독에서 사전적 감독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과징금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적격성 강화를 위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 신규 제도가 대폭 도입('20년~)

\* 상장법인 등은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

\*\* 일정 품질관리수준을 갖춘 회계법인에 한정하여 상장법인 감사를 허용

◦ 또한, 감리 전단계로 재무제표를 심사하여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19.4월~)

⇒ 新외감법 도입에 따라 전면개편된 회계감독들에 맞춰 회계취약분야 및 대규모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실효성 있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정착 등에 중점을 두고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

2019년 심사·감리업무 운영목표

- ◆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질서 확립
- ◆ 新외감법 체제에 맞춰 전면 개편된 회계감독들 구현

과제	중점 추진사항
취약부문 회계감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취약분야 및 대규모 기업에 대한 중점모니터링 실시</li> <li>■ 무자본 M&amp;A 추정기업에 대한 기획심사 실시</li> <li>■ 효과적 회계감시를 위해 합동심사반 구성·운영</li> </ul>
실효성 있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한 자진정정 유도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 신속 제공</li> <li>■ 경미한 오류 등은 경조치로 종결하여 기업의 감리부담 완화</li> <li>■ 투자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오류는 엄중 조치</li> </ul>
제제조치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과실 위반에 대한 조치수준 경감</li> <li>■ 고의적 위반에 대해서는 절대분식금액 기준 도입 등 엄중조치</li> <li>■ 회계감독지침 제공 확대 등 시장과의 소통 강화</li> </ul>
회계법인 책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법인 수사보고제도 등 확대된 새로운 공시제도 정착유도</li> <li>■ 중대감사부실 발생시 감사인, 회계법인 대표이사 엄중 조치</li> <li>■ 품질관리 취약사항 집중 감리 및 미흡사항 대외 공개</li> </ul>

중점 추진사항

2. 중점 추진사항

가. 회계취약부문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 회계분식 고위험회사, 회계분식 발생시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대규모 회사에 대한 회계감시 강화

□ (잠재 위험요인)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부실을 감추기 위한 회계분식 유인이 증가

□ (중점 추진사항) 회계분식가능성이 높은 회계취약분야\*, 회계분식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에 대해 중점모니터링 실시

\* 상장폐지조건 회피를 위한 가공매출, 손익조작 등의 회계분식 발생 위험기업 등

\*\* '18년 기준으로 집중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하고 1:1 밀착 모니터링 실시

◦ 자본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무자본 M&A 기업\*에 대해 집중점검 후 기획심사 실시

\* 경영의도 없이 무자본으로 상장사 인수후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결과 초래

◦ '19년 중점 점검분야로 사전예고('18.12.11.)된 4개 회계이슈\*에 대해 심사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심사실시

\* ① 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② 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③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④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 효과적 회계감시를 위해 합동심사반\*을 구성·운영

\* 대규모기업 심사시 복수의 인력(3인이상)으로 긴급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심사 진행

나. 회계정보의 신속한 정정유도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회계정보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여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

□ (잠재 위험요인) IFRS 도입 후 회계처리 복잡화 등으로 감리후 재무제표 정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올바르지 않은 정보가 장기간 사용되어 투자자 피해 발생 및 감독사각지대 발생 우려

\* 특히, 경고 등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도 감리위·증권위를 거치면서 감리종결 후 제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여 기업활동의 안정성 저해

□ (중점 추진사항) 재무제표상 특이사항을 분석하여 법규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19.4.1.)

◦ 회계위반 발견시 신속한 자진정정을 유도하여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재무제표 신뢰도 제고

◦ 핵심사항·특이사항위주의 심사, 감사인 지정제와의 연계등을 통해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 점검을 확대

◦ 비반복적인 과실 오류 등은 수정권고 이행시 경조치\*로 종결하여 기업의 감리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되

\* 금감원장조치(경고 이하) 절차를 통해 심사종결

-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오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

다. 제재조치 합리화를 통해 심사·감리결과 수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경미한 위반사항은 경조치로 종결하고 고의 위반사항은 제재를 강화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고의적 분식은 억제

□ (잠재 위험요인) 제재조치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회계기준위반 제재수준 등을 합리화하고 피조치자 권익보호 강화 필요

□ (중점 추진사항) 비고의적이면서 금액적 중요도가 낮은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을 경감하고, 제재양정기준을 합리화\*

\*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

◦ 다만,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절대분식금액 기준 도입,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엄중 조치

\* 회계기준 위반시 분식금액의 최고 20%(금액 한도 없음)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19.4 월 시행)

◦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감리자료 열람허용, 감리진행상황 통지 등 피조치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충실히 이행

◦ 회계기준상 해석이 명확치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하여 회계감독지침\* 등을 제공하고 계도위주의 심사 실시

\*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내에서 구체적 지침을 마련

라. 감사품질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감사인 등록제 등 새로운 감독 프레임하에서 회계법인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유도

□ (잠재 위험요인) 감사품질보다는 영업실적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 회계감사 기피 회계사 증가, 회계분식 관련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성(自省)부족 등으로 감사품질 하락 소지 상존

□ (중점 추진사항) 수사보고, 사업보고서 공시 확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평가결과에 대한 회계법인의 수용도 제고 등을 위해 금년중 시범평가 실시 및 문제점 보완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

◦ 중대 감사부실 발생시 감사인과 감사품질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을 엄중 조치\*

\* (감사인)과징금 부과 확대(고의·중과실시 최소 감사보수의 50% 이상, 최대 5 배)

(대표이사·품질관리이사)직무일부정지건의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  
 ◦ 직전 품질관리감리 결과 및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등을 토대로 품질관리 취약부문에 대해 집중 감리하고, 회계감사기준상 중요한 감사절차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심사감리  
 실시대상

**3. 심사·감리 실시대상**

◆ 금감원은 2019년에 상장법인 등 169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7사 내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재무제표 심사·감리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년(126사) 대비 대폭 증가한 169사 내외\*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심사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

\* 회계기준 위반 혐의건수 및 위반건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계량·비계량 분석을 통해 회계분식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 '19년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해당회사 등을 심사대상으로 선정

- 상장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확률 제고를 위해 장기 미감리 회사(예:10년이상) 등도 심사대상에 포함

나.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감리\*

\*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구축한 내부시스템의 적정성과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동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를 점검하는 감리

□ 상반기 2사, 하반기 5사 내외 등 총 7사\* 내외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회계법인 수시보고제도 등 신규제도의 도입준비 등을 감안하여 전년(11사)보다 일시적으로 감리대상을 축소

◦ '19년 중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한영 등)에 대한 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 美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美상장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현재 삼일·삼정·안진·한영 4개)은 PCAOB에 등록 및 정기검사를 받고 있어 금감원과 공동검사 실시(PCAOB 및 공동검사 개요 등은 '참고 2' 참조)

기대효과

**4. 기대효과**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한 수정공시 유도, 경조치 신속 종결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보호를 개선

□ 상장폐지 위험기업, 무자본 M&A 추정기업 등 회계취약부문 및 대기업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하여 자본시장 질서 확립 유도

□ 제재조치 합리화를 통해 실수는 용인하되 고의적 분식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함으로써 악의적, 대형 분식회계를 효과적으로 억제

감사인 조치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회계신뢰성 제고라는 외부감사 본연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회계법인의 책임성 제고

⇒ 新외감법에 따라 강화된 회계감독프레임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회계부정을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회계정보를 수정공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기업의 회계신뢰성 인식 제고에 기여

**재무제표 심사제도 [참고]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요 시행방안**  
**주요 시행방안**

1. 심사 대상 선정

(표본심사)표본 추출 방식으로 일반심사(위험요소·무작위) 및 중점심사(회계이슈) 대상을 각각 선정합니다.

(혐의심사)오류수정\*, 제보 및 감리 의뢰\*\* 등에 따라 혐의사항이 접수된 경우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자진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중요성 4 배 이상 금액 수정 또는 최근 5년 3회 이상 수정

\*\* 위반행위가 구체적이거나 중대한 경우 재무제표 심사없이 혐의감리 실시 가능

※ 주기적지정제와 연계하여 감사인 지정 회사는 표본심사 제외

2. 심사 수행절차

(기초자료 수집)DART 공시자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Kisline 기업정보 등을 통해 회사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합니다.

(위반사항 적출)재무제표 특이사항(분석점검표 추출) 및 혐의사항(제보내용 등)을 검토하여 회계위반사항을 적출합니다.

◦ 특이·혐의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그 합리성 여부를 검토하여 회계위반여부 판단

◦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계정에 대해 회계기준에 따라 주석이 충실히 기재되었는지 심사

(무형의 종결)심사 결과 특이사항이나 회계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무형의 종결합니다.

(수정공시 권고)회계위반 발견시 회사의 신속한 자진정정을 유도하기 위해 10 영업일(일정요건 충족시 연장可)내에 수정공시하도록 권고합니다.

\* 지적내용에 대해 회사 자체 검토 및 감사인 협의 후 수정하도록 권고하며, 심사 착수전 또는 심사 중 자진수정한 경우 권고 생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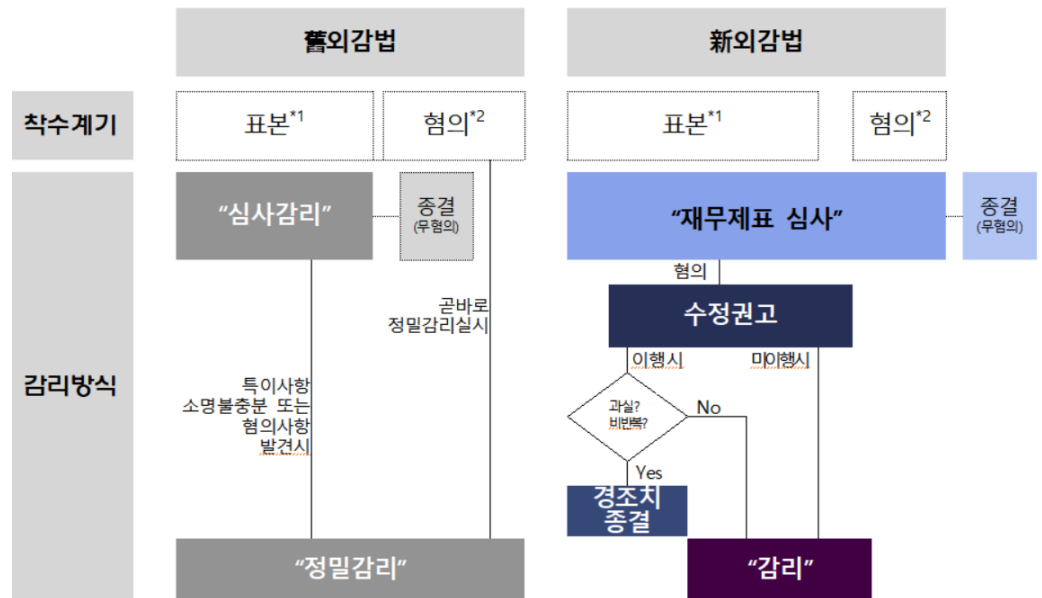
(심사결과 조치)경미 위반 등\*을 수정공시한 경우 금감원장 조치(경고 이하) 절차를 통해 심사 종결합니다.

\* 중과실·고의 또는 반복적 위반에 미해당(해당시 감리 실시)

**[舊 심사감리·  
정밀감리와  
新 재무제표  
심사·감리  
차이점]**

**[舊 심사감리·정밀감리와 新 재무제표 심사·감리 차이점]**

- (舊 심사감리와 “재무제표 심사”의 차이점)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대해 회계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 재무제표 심사는 舊 심사감리보다 핵심사항 등에 집중하여 점검기간이 짧고, 경미한 건\*은 심사단계에서 경조치로 종결한다는 차이 존재
  - \* 과실에 해당하고 수정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 (舊 정밀감리와 “감리”의 차이점) 기존에는 혐의가 있는 모든 건에 대해 정밀감리를 실시한 반면, 향후에는 재무제표 심사를 거친 후 일정요건을 충족(중과실 이상 등)하는 건에 한해 “감리” 실시합니다.



\*1 위험요소, 무작위

\*2 오류수정, 제보 및 검사결과 위반 등(위반행위가 구체적이거나 중대한 경우 재무제표 심사없이 혐의감리 실시 가능)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019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국무회의를 통하여 2019 세법개정안 수정 확정 - 기획재정부 (2019.8.27.)

□ 기획재정부는 지난 7.25.(목)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한 부처협의(7.26.~8.5.) 및 입법예고(7.26.~8.14.)를 실시 한 후, 8.27.(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상기 15개 법률안들은 9.3.(화)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수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추가 연장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추가 연장(조특법 §25 조의 6)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 (공제율) 대.중견.중소기업 3.7.10% → 1.3.7%로 인하  ○ (적용기한) '19.12.31.에서 '20.12.31.로 1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추가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19.12.31.에서 '22.12.31.로 3년 연장

<수정이유> 제도 시행 초기('17년 첫 시행)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기 확대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기 확대(조특법 §16①)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시기 명확화  ○ 출자 또는 투자한 과세연도에 소득공제	<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시기 확대  ○ ①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시 ②선택 가능  ①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 과세연도

<수정이유> 투자자의 선택권 제고

국세의 범위에 관세 미포함

3. 국세의 범위에 관세 미포함(국기법 §2)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세의 범위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관세 추가	<input type="checkbox"/> 국세의 범위 <b>현행 유지</b> ○ <b>관세 삭제</b>

<수정이유> 통관절차 분법을 위한 내년 관세법 전부개정 추진시 함께 검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추가 연장

4.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추가 연장 (소득법 §164①단서, §164의 3①)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제출기한 5일 연장 ○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 * (1/4) 4.15 (2/4) 7.15 (3/4)10.15 (4/4) 1.15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 * (上) 7.15 (下) 1.15 <input type="checkbox"/> 휴업·폐업·해산시 제출기한 연장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	<input type="checkbox"/> 제출기한 추가 연장 ○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b>말일</b> * (1/4) 4.30 (2/4) 7.31 (3/4)10.31 (4/4) 1.31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b>말일</b> * (上) 7.31 (下) 1.31 <input type="checkbox"/> 제출기한 추가 연장 ○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b>말일</b> ○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b>말일</b>

<수정이유>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정

5.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정 (소득법 §100 의 6⑦)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 ○ (상반기) 8.21. ~ 9.10 → 8.25. ~ 9.10. ○ (하반기) 2.21. ~ 3.10. → 2.25. ~ 3.10.	<input type="checkbox"/> 추가 조정 ○ (상반기) 9.1. ~ 9.15. ○ (하반기) 3.1. ~ 3.15.

<수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하여 신청기간 재조정

결손보전시 익금불  
산입 되는 자산수증  
익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제외 적  
용시기 조정

6. 결손보전시 익금불산입 되는 자산수증익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제외 적용시기 조정(소득법 §26②, 법인법 §18)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 되는 자산수증익* 범위 축소 *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총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등은 익금산입 ○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개정안 적용시기 조정 - - - ○ (좌 동) - 단, '10.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총당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익금불산입)

<수정이유> 동 개정안은 '20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과규정을 두어 제도시행에 따른 법인부담을 일부 완화

\* '10.1.1.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공제기간(10년)이 남아 국고보조금등을 익금산입해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한 반면, '10.1.1.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기간 경과로 공제 불가능한 점 감안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  
조정

7.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 조정(국조법 §12)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시 추가 과태료 신설 및 상한 인상  ①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 인상(1억원 → 3억원)  ② ①에 따른 과태료 부과 후 과세당국의 시정요구 불응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추가 부과  ③ ①, ②에 따른 과태료는 합하여 최대 3억원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상한 합리화  ① 과태료 상한 현행 유지 (1억원)  ② 시정요구에 따른 추가 과태료 상한 신설(2억원)  < 삭 제 >

<수정이유>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과태료 상한을 각각 규정

조세정보 교환을 위  
한 정보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범위  
조정

8.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범위 조정  
(국조법§31 의 4①)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조세정보 제공 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 2천만원 → 3천만원	<input type="checkbox"/> 과태료가 인상되는 조세정보 범위 축소  ◦ 조세정보 중 실제소유자 정보 제공 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 2천만원 → 3천만원

<수정이유> 조세정보 범위가 넓어 과태료 인상부담이 클 수 있어 실제소유자 정보에만 과태료 인상 적용

- 이 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을 위하여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5081, 2019.08.13)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고,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고 하면서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등을 들고 있으며,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 안에서 특정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베트남은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베트남 내 매출처가 원천징수·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나,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재국조-151, 2018.2.6., 같은 뜻임).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3자 매출을 위한 영업활동, 구매, 연구 및 개발활동(R&D), 공급계약 체결 등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000 공장에 파견된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활동은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지나지 않으므로 베트남 내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다수의 직원을 베트남 000 공장(물리적 장소)에 파견하고 있고, 이들이 제조설비 관리, 생산·품질관리·납품(인도)·사후관리·영업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장소 등으로 000 사업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베트남 과세당국이 000 사업장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이 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을 위하여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분할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과세연도에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27, 2019.09.04)

(사실관계)

- 갑법인(이하 “분할법인”)은 컴퓨터 제조 및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8과세연도 중 컴퓨터 도소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음.

- 분할법인의 2018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은 1,200억원이나 분할등기일(2018.12.1.) 이후부터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매출액이 50억원임.

-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이후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600억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과세연도에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분할법인의 매출액 산정방법

(회신)

제조 및 도소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도소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본 해석사례는 회신일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④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문의처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a href="mailto:secretary@crowe.kr">secretary@crowe.kr</a></p>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